

2.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0년 9월 25일

○ 발 의 자 : 김대현·강민구·강성환·김원규·박갑상·박우근·윤기배
홍인표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9월 29일

○ 상정일자 : 제2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년 10월 12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기배 의원)

□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과 공적의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청과 준공영성을 가진 민간의 구호·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재난구호활동 강화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를 조직해 재난현장에서의 구호활동 및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건 안전사업을 펼쳐 오고 있음.
- 적십자는 적십자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 적십자사 운동에 따라 인도주의의 실현, 세계평화, 인류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대한제국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이 반포되며 최초 설립되었고, 1945년에는 대구적십자 진료소가 개원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보건안전증진을 위해 일해왔음.
- 현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로 그 조직이 확대되어, 긴급재난시의 물자 및 인력동원과 평시 일반구호활동, 급식봉사 및 취약계층 돌봄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적십자사의 활동은 이미 급부행정의 영역에 일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그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사회에서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가야 함.
-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유보된 자치단체의 위임 사무를 중심으로 적십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보건·구호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

□ 조례안 주요 내용

- 발의 취지에 따라, 7개 조항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관련 사업을 각 호로 정리하였음.
- 안 제4조는 법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과 포상에 관해 규정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이 제정조례안은

- ▶ 지역 공공복리 증진 및 인도주의 확산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적십자사에 대해 살펴보면

- ▶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법인으로 설립·운영 중인 대한적십자사의 15개 지사* 중 하나로,

* 대한적십자사 지사 현황(15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제네바협약⁷⁾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재난구호,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구호사업과 사회봉사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RCY), 안전 및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음.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기관 현황〉

- 위 치 : 중구 태평로 7 (달성동)
- ※ 토지 1,307.35㎡ / 건물 882.35㎡ (지상 2층)
- 조직/인력 : 3팀 1본부 1봉사관 / 24명(사무처장, 팀장 4, 담당 19)
- 예 산 : 54억(일반회비 20, 후원회비 17, 기부금품 4, 기타 회비외수입 13)
- 주요사업 : 재난구호, 결연지원, 사회봉사, 안전교육, 해외개발협력 등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제정조례안은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음.
- ▶ 안 제3조에서는 적십자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 내용, 협조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7) 제네바협약 :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보호를 위하여 1864~1949년의 제네바에서 체결된 일련의 국제조약

- 이는 법 제7조8) 및 제8조9)에 따라 현재 적십자사에 대해 이뤄지는 보조금지원, 자료제공 등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월	사업명	금액	비고(담당부서)
계		171	
2018. 11.	제39회 어르신한마음대축제	38	어르신복지과
2019. 4.	제58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	95	자치행정과
2019. 9.	제40회 어르신한마음대축제	38	어르신복지과

- ▶ 안 제4조에서는 법 제23조10)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무상 대부하는 공유재산은 없으나, 향후 수요가 발생할 경우 목적, 사용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부할 필요가 있음.

- 8)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9)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10) 제23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 ▶ 안 제5조에서는 법 제22조11)에 근거하여 적십자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 및 절차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음.
- ▶ 안 제6조에서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헌이 있는 단체 및 사람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함.
 -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적십자사 연차대회 행사에서 10여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고 있음.
- ▶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제정안 제출은 적십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에 규정된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으며,
- ▶ 대구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16개)에서 이미 동일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바, 대구시에서도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적십자사와 상호

11)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협력을 강화하여 각종 구호사업, 보건의료 활동 등 시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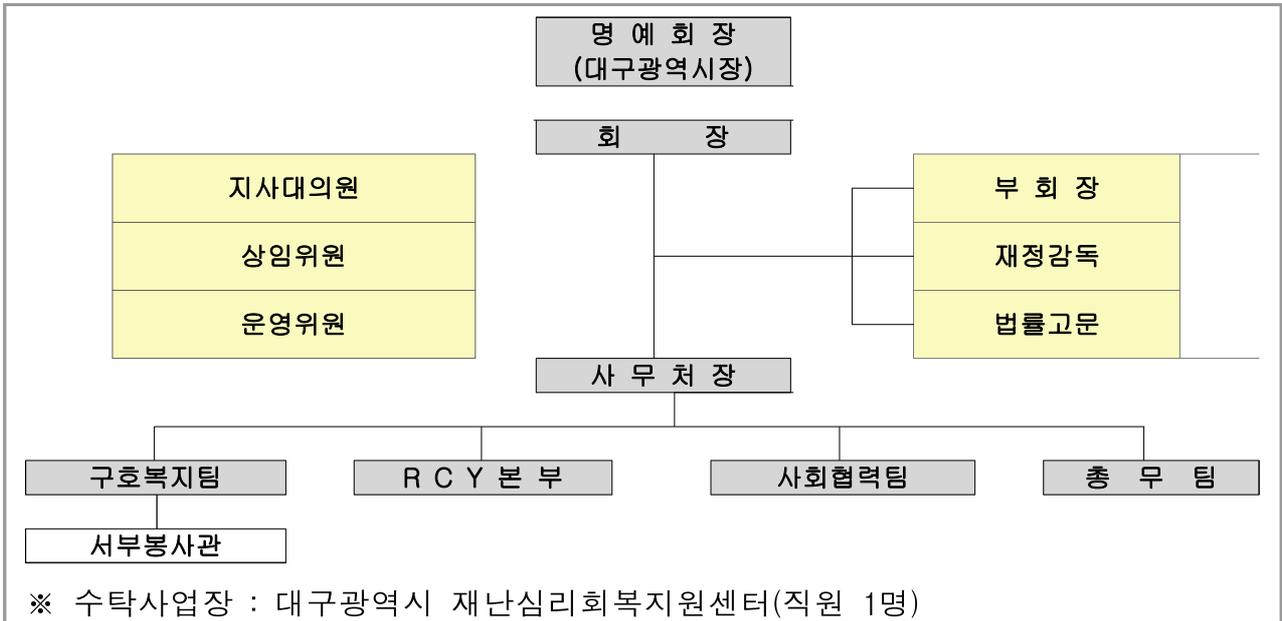
다만, 예산지원 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임.

참고 1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운영 현황

□ 기관 현황

-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달성동)
 - 토지 1,307.35㎡(396.1평) / 건물 882.35㎡(267평, 지상 2층)
- 조 직 : 3팀 1본부 / 1봉사관



- 인력 구성 : 24명 (사무처장, 팀장 4명, 담당 19명)
 - ※ 총 활동 인력(임원, 봉사단 포함) 147,143명
 - : 임·직원 75, 봉사원 3,591, RCY단 회원 11,066, 안전강사 120, 일반·후원회원 132,291
- 예산(2020년) : 54억(일반회비 20, 후원회비 17, 기부금품 4, 기타 회비외수입 13)

□ 주요 사업 실적(2019년)

구 분	사업내용	추진실적	비 고
구호사업	구호활동	57가구 / 1,590명	
	재난취약계층지원	10,828가구 / 12,057명	
	심리지원	655회 / 716명	
	긴급지원	68가구 / 125명	
사회봉사사업	희망풍차(결연지원)	900가구 / 1,713명	
	희망풍차(맞춤지원)	31,920명	
	봉사활동시설운영	330회 / 81,695명	빵, 국수 나눔 등
청소년(RCY)사업	안전·봉사·교류·이념활동	1,965회 / 53,227명	
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404회 / 27,663명	
	수상안전교육	14회 / 376명	
국제교류	초청 / 방문	2회(28명) / 2회(20명)	

참고 2**최근 5년간 대구시 포상 현황**

(단위 : 명)

구 분	포상인원	포상시기	비 고
2020년	14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연차대회	11월 예정
2019년	12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연차대회	
2018년	14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연차대회	
2017년	14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연차대회	
2016년	16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연차대회	

참고 3**대한적십자사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서 울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 9.
부 산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2015. 5. 27.
인 천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2. 26.
광 주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2014. 5. 1.
대 전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2019. 6. 28.
세 종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2014. 1. 10.
울 산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0. 1.
경 기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 5.
강 원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2016. 2. 26.
충 북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5. 18.
충 남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2018. 10. 30.
전 북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0. 5.
전 남	전라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2020. 4. 2.
경 북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4. 6.
경 남	경상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2. 5.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0. 6.

참고 4**구군별 대한적십자사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중 구	조례 없음	
동 구	조례 없음	
서 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11.
남 구	조례 없음	
북 구	조례 없음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30.
달서구	조례 없음	
달성군	조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의 조직 현황은? ○ 적십자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 외에 신규 사업 위주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함. ○ 앞으로 조례에 따라 지원될 재정 지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자료 제공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시 전체 보조금 예산 규모, 타 단체와의 형평성, 중복지원 여부, 사업성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길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팀과 RCY본부, 서부봉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적십자 관련 봉사단도 활발히 활동 중임. ○ 향후 보조금 지원 시 그 부분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해나가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